

TAX UPDATE

2024-2025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WWW.CHLKCPA.COM

개인납세자

◆ CLEAN VEHICLE CREDIT (청정 차량 크레딧)

- 세액 공제는 차량당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같은 해에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한 모든 적격 새 차량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는 납세자가 대리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선지급 크레딧 금액을 연간 2대의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 Tesla 및 General Motors와 같은 제조업체의 차량은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2022년 이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청정 차량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임차인은 청정 차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르면 적격 차량은 납세자로부터 처음 사용이 시작되는 차량으로, 재판매용이 아닌 납세자가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입니다.
- 차량의 중요 자재 및 배터리 구성 요소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 처리, 추출 또는 생산되는 경우 청정 차량 크레딧의 최대 금액은 자격을 갖춘 차량당 \$7,500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한은 납세자가 2023년 4월 17일 이후에 인도받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요구 사항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3,750로 제한됩니다.
- 2024년에 운행되는 차량부터 납세자는 IRC §30D 및 §25E에 따라 청구된 크레딧에 대해 대리점에서 청정 차량 크레딧 선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가 차량이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딜러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만 해당).
- Form 15400은 차량 구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청정차량 판매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차량이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만 작성되며, Form 8936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 청정차량 세액공제(CVC)나 중고청정차량 세액공제(Used CVC) 자격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판매자가 Form 15400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이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Form 15400을 제공하지 않으며, Form 15400을 받지 못하면 그 차량은 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Form 15400 없이 청정차량 세액공제를 청구하면, IRS에서 공제가 거부됩니다.

◆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IRC §25C에 따른 환불 불가능한 Nonbusiness Energy Credit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3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30%의 공제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200**까지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동안 설치된 적격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했거나 발생한 금액 그리고,
 - 해당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가 지불했거나 발생한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지출 금액(인플레이션 감소법 이전에는 이 금액에 대한 percentage limit이 없었습니다)
-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목록에 공기 밀봉 재료 또는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 확장된 에너지 효율 자산 목록에는 천연가스 히트펌프, 천연가스, 프로판, 석유 난로 또는 온수 보일러, 바이오매스 스토브 또는 보일러, 적격 패널보드, 하위 패널보드, 분기 회로 또는 피더의 개선사항 또는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건물 외관 구성 요소 목록에서 아스팔트 및 금속 지붕이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이후 서비스가 시작된 모든 품목에 대해 적격 제조업체의 생산이 요구되고,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적격 제품 식별 번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3,200 한도**는 각 항목에 대해 제한이 있으며, 주택은 미국 내에 위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 주택의 **20% 미만**이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초과** 사업용 사용 시, 개선 사항은 비즈니스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설치된 장비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세금 연도부터는 일부 장비에 고유한 PIN 번호**가 필요하고, 이 번호는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SECURE ACT 2.0

- **Traditional IRA:** 2024-2025년 기여 한도는 최대 \$7,000이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1,000 기여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추가 기여를 허용하지만 세금 공제는 \$1,000으로 제한되고, 70.5세 이상은 공제 불가합니다. Traditional IRA의 필수 최소 인출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시작하는 나이는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2세였으나, SECURE Act 2.0에 의해 2023년부터 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조정되었습니다.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73세에 RMD를 시작해야 하며,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75세에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 **QLACs(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 QLAC는 최대 \$200,000(2025년 \$210,0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전통적 IRA, 403(b), 457(b)에서 구매 가능. 분배는 최소 85세부터 시작됩니다.
- **QCDs(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QCD를 통해 최대 \$105,000까지 기부 공제가 가능하고, 2025년에는 \$108,000으로 조정됩니다. RMD는 73세부터 시작되지만, QCD는 70.5세부터 가능합니다. Secure 2.0에 따라 최대 \$50,000까지 기부 유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nherited IRAs:** 상속받은 IRA는 계좌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전액 분배해야 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Roth IRA:** 2024-2025년 Roth IRA 기여 한도는 최대 \$7,000이며, AGI에 따라 제한됩니다. 2026년부터 고소득자는 Roth 방식으로만 Catch-Up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SEP & SIMPLE IRAs:** SEP IRA는 고용주가 최대 25%까지 기여할 수 있고, SIMPLE IRA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직원과 고용주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SIMPLE IRA는 매년 3% 매칭 또는 2% 고정 기여가 필요합니다.
- **New Nonelective SIMPLE Contribution Option:**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대 \$5,000까지 추가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는 고정 비율로 적용되고 직원 보수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 **Emergency Savings Accounts:** 비고소득 직원에게 자동으로 설정되는 긴급저축계좌는 최대 \$2,500까지 기여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 출금 시 벌금이 면제됩니다.
- **Matching Contributions for Student Loan Repayments:**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퇴직연금 기여로 매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1099-DA

-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부터, 브로커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디지털 자산 판매로 얻은 수익을 1099-DA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브로커는 총 수익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는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초 금액도 보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마감된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불하고 판매자가 받은 디지털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브로커 보고 규정은 Form 1099-S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Form 1099-S는 부동산 거래 보고를 위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

◆ BUSINESS CLEAN VEHICLE CREDIT

2022년 12월 31일 이후 및 2033년 이전에 구매한 적격 차량의 경우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 적용 대상입니다. 세금 혜택 (Credit) 의 상한은 \$40,000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의 경우 \$7,500) 입니다.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은 구매 시점에서 딜러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Tax-exempt entities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MONETIZING ENERGY CREDIT

2024이후의 과세연도부터 기업들은 에너지 세금 혜택 (Credit) 을 판매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 판매로 인한 수입을 인식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환불할 수 없는 공제액을 환불할 수 있는 공제액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 (Credit) 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 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 Energy Investment Credit
-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캘리포니아는 FATCA 규정 사항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은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와 함께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 \$10,000 + 캘리포니아 \$10,000).

◆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2024년 12월 3일, 텍사스 법원이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따른 실질 소유권 보고 의무의 시행을 중단하는 전국적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5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후 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하여 이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고대상인 기업들은 2025년 1월 13일까지 FinCEN에 BOIR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1 에 의해 의무화된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요건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특정 소유주와 임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 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eneficial owner란?

- Beneficial owner는 직간접적으로 신고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보고 대상

- A domestic corporation, LLC, including a single-member LLC 및
- A foreign corporation, LLC, or Secretary of State 등 정부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보고 제외 대상

- General partnerships and trusts,
- Investment companies and advisors,
- Tax-exempt organization 및
- 20명 이상의 US 정규직 직원과 총 수입500만 달러 이상의 회사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 1/1/2024 이후 설립된 신규 국내 및 해외 법인: 설립 및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존 법인: 2024년 이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NEW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 FORM

2024년부터 단기 임대 재산 (예: Airbnb) 소유자는 사업용 개인 재산을 신고하기 위해 새로운 Form BOE-571-STR, 단기 임대 재산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사업용 개인 재산은 1년에 한 번 재평가됩니다. 사업주는 매년모든 용품, 장비 및 집기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Form BOE-571-ST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비례 배분 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TAX UPDATE

&

TAX PLANNING

207.70

210.95

207.70

24.27

18.92

210.95

149.16

23.26

1.41%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는 모든 납세자의 총 의료 비용이 조정후 총 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4년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비율은 마일당21¢입니다.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거주지의 모기지 융자 탕감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 됩니다. (부부 공동 보고 시 \$750,000 까지, 부부 별도 보고 시 \$375,000 까지) 캘리포니아는 2013년 이후, 주 거주지 모기지 융자 탕감 소득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은퇴 연금 플랜 (401(k), SEP IRA 등) 에 저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024년의 경우 401(k) 의 최대 금액은 \$23,000 (50세 이상인 경우 \$30,500) 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의 최대 금액은 \$69,000입니다. 2025년에 401(k) 의 경우 최대 \$23,500 (50세 이상인 경우 \$31,000), SEP IRA의 경우 최대 \$7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납세자는 2024년 세금 공제를 위해 2025년 4월 15일까지 IRA 계정에 최대 \$7,000 (50세 이상인 경우 \$8,000) 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최대 \$7,000 (50세 이상은 \$8,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소득 (conversion income) 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환하는것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LACs**(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는 **IRA**의 **RMD**(필수 최소 분배) 요구사항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최대 금액은 **2024년 \$200,000, 2025년 \$210,000**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됩니다. **QLACs**는 **정의된 기여 플랜, 전통적인 IRA, §403(b) 및 §457(b) 플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2024년부터, 퇴직연금 계좌 소유자는 73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72세). 1951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73세에 첫 RMD를 시작해야 하며, 195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72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RMD를 연기한 납세자는 두 번째 해에 2번의 RMD를 수령해야 합니다. RMD를 수령해야 하는 자격이 되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계좌 소유자가 59½세가 되기 전에 계좌에서 은퇴금 수령 (distribution)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 또는 적격 연금 플랜에서 수령한 은퇴 연금 금액은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롤오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없이 롤오버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목적과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10% 추가 세금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예외 적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HILD TAX CREDIT (CTC)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녀 세금 공제액은 자녀당 \$2,000입니다. 이 자격이 되는 아동은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을 소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녀가 아닌 other dependent에게 제공되는 \$500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제액 (Credit) 중 \$1,70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S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를 선택할 경우, 2023년 조정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 현금 contribution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0% of Federal AGI)

- **QCDs(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105,000, 2025년 \$108,000으로 조정됩니다. 70½세 이후부터 기부할 수 있으며, RMD에 포함되어 AGI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SECURE 2.0은 한 번에 \$50,000을 자선 기부 연금, 자선 잉여 신탁, 자선 잉여 연금 신탁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당 연도의 QCD 한도에 포함됩니다.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RS는 실제 통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또는 실제 통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 화폐의 과세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S Notice 2014-21)

1. 2024년 중 어느 시점이든지 가상 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 판매, 송금, 교환 또는 취득한 납세자는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3.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4.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를 시작으로 가상 화폐 플랫폼은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Form 1099-B를 발급해야 합니다. Coinbase 및 Robinhood와 같은 많은 플랫폼은 이미 1099-B양식과 유사한 명세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종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가상 화폐 거래 관련 1099 신고가 적어도 2024년 (2025년 초 발행되는 1099)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7일부터 단일거래에서 \$10,000 이상의 코인 포함 가상화폐를 받으면 거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Form 830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동일하게 워시세일 (Wash Sale)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 화폐를 매도한 후 매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사한 가상 화폐를 매수한 납세자는 주식매도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NONFUNGIBLE TOKENS (NFT)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token)입니다.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NFT 의 Collectible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look-though" 분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 Notice 2023-27). NFT 가 Collectible 로 판단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Collectible 에는 28%의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IRA 를 Collectible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IRA 소유자의 과세 가능 분배금으로 간주됩니다.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4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8,000 (2025년은 \$19,000)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8,000 이상의 증여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증여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1인당 통합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3,610,000 (2025년은 \$13,990,000)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후에 \$5,000,000으로 다시 감소할 예정입니다. 연간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액에 합산되므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2024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최대 \$126,500의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253,000까지 (2024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2024년 동안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서 해외계좌를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5까지 연장가능) 외국 금융 계좌에는 다음 계좌들이 포함됩니다: 중개 계좌 (Brokerage Accounts), 뮤추얼 펀드 (Mutual Funds), 신탁 (Trusts) 또는 기타 유형의 외국 금융 계좌.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5,71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56,107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 부부 \$100,000/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 부부 \$400,000/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 부부 \$150,000/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 부부 \$600,000/Single \$300,000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 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CONTINUE IN 2024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4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성인 1인당 \$850 (부양 자녀당 \$425);
2. 연간 최대 \$2,550 까지

FIRST-TIME PENALTY ABATEMENT

2022년 1월 1일부터 FTB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늦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요청은 구두 (orally) 또는 서면 (in writing)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IRS)는 4년에 한번씩 벌금감면을 허락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벌금감면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벌금감면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며 세금 보고서 미제출, 세금 미납, 늦은 세금 보고서 제출 또는 늦은 세금 납부에 한에 적용됩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REINVESTED DIVIDENDS

CAPITAL GAIN (LONG-TERM)

WASH SALE

INVESTMENT INTEREST

INSTALLMENT SALE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2024)			
	독신 (Single)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외부모 (Head of Household)
0%	\$47,025	\$94,050	\$47,025	\$63,000
15%	\$518,900	\$583,750	\$291,850	\$551,350
20%	No Breakpoint			

**조정후 총소득(AGI) 금액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식이나 증권을 손실로 매도한 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구매하거나, 완전히 과세되는 거래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해당 주식이나 증권에 대한 옵션이나 계약을 취득하거나, IRA나 로스 IRA에서 이를 취득한 경우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재조직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전 회사와 후속 회사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CALIFORNIA MINIMUM WAGE

2024년 1월 1일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시급은 \$16.00-\$16.50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A시의 최저시급 \$17.28, LA시 미편입지구 (Unincorporated Area of LA) 의 최저시급 \$17.27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LLC, S Corporation, 파트너십들은 과세 연도 2021년 - 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 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주주)의 연방 순이익 (Federal Net Income) 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金的 100%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파트너(주주)가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 수탁자 (Fiduciary), 상속재산 (Estate), 신탁 (Trust), Single member LLC 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의 경우, 그 과세 연도 동안 6월 15일까지 첫 번째 납부금 (\$1,000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선택 세금 (Election Tax)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격 조건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나머지 납부금은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CALSAVERS PROGRAM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은퇴 연금 제도입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CalSavers 프로그램을 Roth IRA로 분류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직원당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번째 벌금 통지시). 직원이 1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501(c)(3) 면제 대상인 종교 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NET OPERATING LOSS (NOL)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NOL은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세소득의 100%가 허용됩니다). 이월은 무기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NOL은 최대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모두 전기 이월(Carryback)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UTOMOBILE EXPENSE

2025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 (Standard Mileage Rate) 은 70¢입니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 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2024년동안 Section 179에 따라 사업주는 \$3,05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22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5년부터 40%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적격 개선 자산은 섹션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적격 개선 자산이나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TAX PROPOSALS OF PRESIDENT TRUMPS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세금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조항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 외에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재도입하고, **Section 41** 연구 크레딧을 증액하며, TCJA의 Section 174 연구비 상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에 대한 Deduction 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 및 Travel 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 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 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INCOME TAX AUDIT

IRS EXAMS INCREASING

IRS의 2024-2025 전략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감사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이 세 배로 증가하고, 대형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10배로, 고소득 개인에 대해서는 50%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서 필요합니다.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NCOME TAX AUDIT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EIGN GIFT

2024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9,570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납세자가 form 1099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form 1099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ue Dates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 건당 \$60 ~ \$310 벌금이 부과됩니다.

Form 1099 Due Dates

1) Paper Form 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5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28/2025

2) E-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5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3/31/2025

3) Recipient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5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1/31/2025

INCOME TAX AUDIT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s, 영수증, 송장 (Invoices) 및 기타 모든 문서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Partners

Ilsup (Tommy) Lee	(213) 639-6285	ext.717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24	sykang@chlkcpa.com
Henry Kim	(213) 382-8001	ext.780	hkimcpa@chlkcpa.com

Managers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720	ckmoon@chlkcpa.com

Staffs

Frederick Kim	(213) 385-2598	ext.718	fkim@chlkcpa.com
Emily Chung	(213) 382-8001	ext.781	echung@chlkcpa.com
Sunny Soh	(213) 365-1700	ext.719	ssoh@chlkcpa.com
Kyeongbin (Lucia) Park	(213) 550-2186	ext.723	lpark@chlkcpa.com
Jihyun Lee	(213) 550-2090	ext.725	jlee@chlkcpa.com
Bokyung Shin	(213) 382-8001	ext.782	bshin@chlkcpa.com
Dukjun Seo	(213) 365-1700	ext.710	dseo@chlkcpa.com

Advisors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hong399@gmail.com
Spencer S. Moon (Inactive)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La Palma Office

1 CENTERPINT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F: (714) 735-9029

Partner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eong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Manager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	----------------	---------	--------------------

Staffs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35	ijmo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Ye Bin Kim	(714) 676 -2097	ext.733	yebin@chlkcpa.com
Lia (Kyoung Nam) Choi	(714) 676 -3131	ext.730	liachoi@chlkcpa.com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487-4629 ext.701 jko@chlkcpa.com

Staffs

Seungyeon (Elly) Lim (310) 542-6373 ext.704 elim@chlkcpa.com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La Mirada Office

14730 BEACH BLVD., SUITE 207, LA MIRADA, CA 90638

T: (714) 482-6369

Partner

James M. Chung (714) 482-6369 ext.705 jchung@chlkcpa.com

Staffs

John Kim (714) 482-6369 johnkim@chlkcpa.com

